

공 사 시 방 서

G타워 화장실 타일보수 공사

2023. 1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1장. 총 칙

1-1 공사개요

- 1) 공 사 명 : G타워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
- 2) 대지위치 :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253 (공단동 256-24)
-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
- 4) 공사위치 개요

구 분	내 용	공 정	비 고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내 화장실 각 층별	남,녀 및 장애인 화장실 (3 ~ 9층), 10층 구내식당 바닥	타일공사 (현장조사)	내역서 참조

4-1. 재 료 : 벽체타일 (300*600규격, 도기질), 바닥타일 (300*300규격, 자기질) 지정색 동일품

4-2. 공사구역(상세)

장 소	남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장애인)	여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	10층 구내식당
개소	7개소	3개소	6개소	3개소	1개소

5) 적용범위

- 5-1. 본 시방서는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내 화장실 타일(수장공사)의 시공 시방으로 우선 하여 적용한다.
- 5-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 라 한다)에 따른다.
- 5-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6) 관련법규 및 기준

- 6-1.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현장 상황 및 실측에 의한 미려한 상태로 시공한다.
- 6-2.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 6-3.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

하여야 한다.

7) 용어의 정의

7-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말한다.

7-2.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3.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 ① 본 지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 에게 하청을 줄 수 없다.
-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청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7-4. 현장 대리인

-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8)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등

8-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8-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8-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재판에 따른다.

2. 수 장 공 사

타일시공 및 철거 에 따른 현장건물관리 시공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장공사(타일 및 일부수장 화장실 큐비클) 및 이들의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세라믹계 타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 시방에 의거 기존 설치품 재 처리후 개체 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 및 기타

가. 설치 시공할 자재는 시공전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및 시공 상태로 그 시공방법과 마감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다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타일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타일 및 주변마감재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부자재 및 준비재

가. 본드 및 관련 접착재는 화학적 안정적이고 시공 후 변색, 오염과 악취 등 부합한 재료는 배제한다.(화학적 친환경 부자재 사용 현장 반입한다)

나. 각종 자재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계획 시공될 자재는 시방조건에 맞게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사용자재 시공 규정에 적합하고 화재 및 차후 하자 및 기준강도 이상의 자재로 시공한다.

3. 시공

3.1 타일 및 주변마감부(화장실 큐비클 재설치) 시공

가. 들뜸 타일은 주변부의 영향이 없도록 컷팅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주변부 압착부위도 실란트 주입시 기존 타일의 면 처리 후 들뜸 방지를 보장한다.

(타일작업 시 분진 및 오염원은 즉시 처리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컷팅시 보양 및 흡진기를 병행시공 한다)

나. 타일 면의 하부 평활도가 불균형 할 경우는 부분별 바탕 면 정리 후 타일 시공한다.

다. 각 타일의 색상은 되도록 현행색상과 동일 동질로 시공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협의해서 시공 한다.

라. 관련 시공방안과 보양등은 작업전 사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주변자재 동등이상으로 시공)

마. 벽체 및 바닥재의 이음 부분은 상호 틈새없게 이음부위는 본드 전면 도포하고 본딩작업, 주변 가장자리의 꺾임 부위의 본딩에 주의한다.

바. 현장상황이 개체공사 임을 고려 작업의 신중성과 위험성에 특히 주의해서 안전시공에 중점을 둔다.

사. 양질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실란트, 충전재, 보강재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3.2 기 타

가. 작업은 현장 여건과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와 상호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나. 공사완료 후에는 작업부산물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023년 11월

구미전자정보기술원